[별표] <개정 2013.6.10.>

시설 사용료 징수금액(제22조제2항 관련)

1.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· 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

(단위 : 원)

시설명		사 용 료			비 고
		2시간 까지	2시간 초과 4시간 이하	4시간 초과 8시간 이하	
일 반 교 실		5,000	10,000	15,000	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
시청각교실, 특별교실		20,000	30,000	40,000	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
체육관, 강당		20,000	30,000	40,000	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
운동장	일반	10,000	20,000	30,000	
	인조·천연잔디	20,000	30,000	60,000	
수 영 장		「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」 준용			
기 타		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.			

2.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·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

(단위 : 원)

시설명		사 용 료			비 고
		2시간 까지	2시간 초과 4시간 이하	4시간 초과 8시간 이하	
일 반 교 실		10,000	20,000	30,000	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
시청각교실, 특별교실		40,000	60,000	80,000	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
체육관, 강당		40,000	60,000	80,000	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
운동장	일반	20,000	40,000	60,000	
	인조천연잔디	40,000	60,000	120,000	
수 영 장		「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」 준용			
기 타		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.			